환경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5. 3. 30.(일) 12:00 (월요일 조간) 배포 2025. 3. 28.(금)

퇴비, 강가에 방치하면 안돼요… 야적퇴비 관리 안내서 전국에 배포

- 야적퇴비의 관리 방법·조사 및 지도·점검 등 체계적 안내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녹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야적퇴비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안내서를 전국 지자체에 3월 31일부터 배포한다고 밝혔다.

야적퇴비는 농가에서 가축분뇨를 볏단 등과 함께 미생물로 발효시켜 외부에 쌓아둔 것을 말한다. 주로 경종(재배)농가에서 봄철 씨뿌리기 전부터 농경지에 뿌릴 목적으로 강가(하천변) 등 야외에 쌓아두는 것이다.

그러나 야적퇴비를 적정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악취가 발생하고, 빗물에 퇴비가 씻겨 나가 영양물질(질소, 인)이 하천으로 유입되면 녹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번 '야적퇴비 관리 안내서(매뉴얼)'는 환경부가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했던 야적퇴비 관리방안을 체계화한 것으로, 지자체 등 관리 기관 간의 역할 구분을 비롯해 수거·조치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했다.

주요 내용은 △지자체 및 유역(지방)환경청 직원의 야적퇴비의 조사 방법, △위반 행위 지도·점검, △농가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방법 등이다.

특히 농민들이 강가(하천변), 제방, 농·배수로 주변이나 공공부지에 방치한 퇴비를 수거하고, 개인 축사나 농경지에 밀폐된 구조로 보관하거나 덮개, 천막 등으로 덮고 날아가지 않도록 고정시키는 등 철저한 관리 방법도 소개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자체와 함께 올해 2월 말부터 녹조예방 등을 위해 한강, 낙동강 등 전국 주요 상수원 인근 농경지를 대상으로 야적퇴비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이번 안내서에 따라, 지자체는 공유부지 하천 부근에 야적퇴비가 확인될 경우 해당 소유주에게 이를 모두 수거하도록 안내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하게 된다.

그 외 사유지에 보관된 야적퇴비에 대해서는 소유주에게 덮개를 제공하고 빗물에 씻기거나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적정한 보관 방법을 교육한 후, 장마철이 되면 덮개가 잘 설치되었는지 수시로 점검할 예정이다.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퇴비의 양분은 농경지 안에서는 유용하지만, 빗물과 함께 하천에 흘러가면 녹조의 원인이 된다”라며 “이번 안내서를 통해 상수원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야적퇴비 관리 안내서(표지).
2. 야적퇴비 관리 안내서 요약.
3. 야적퇴비 관리 법적 근거.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수질수생태과	책임자	과 장	김경록 (044-201-7060)
		담당자	주무관	이신영 (044-201-7077)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임 1	야적퇴비 관리 안내서(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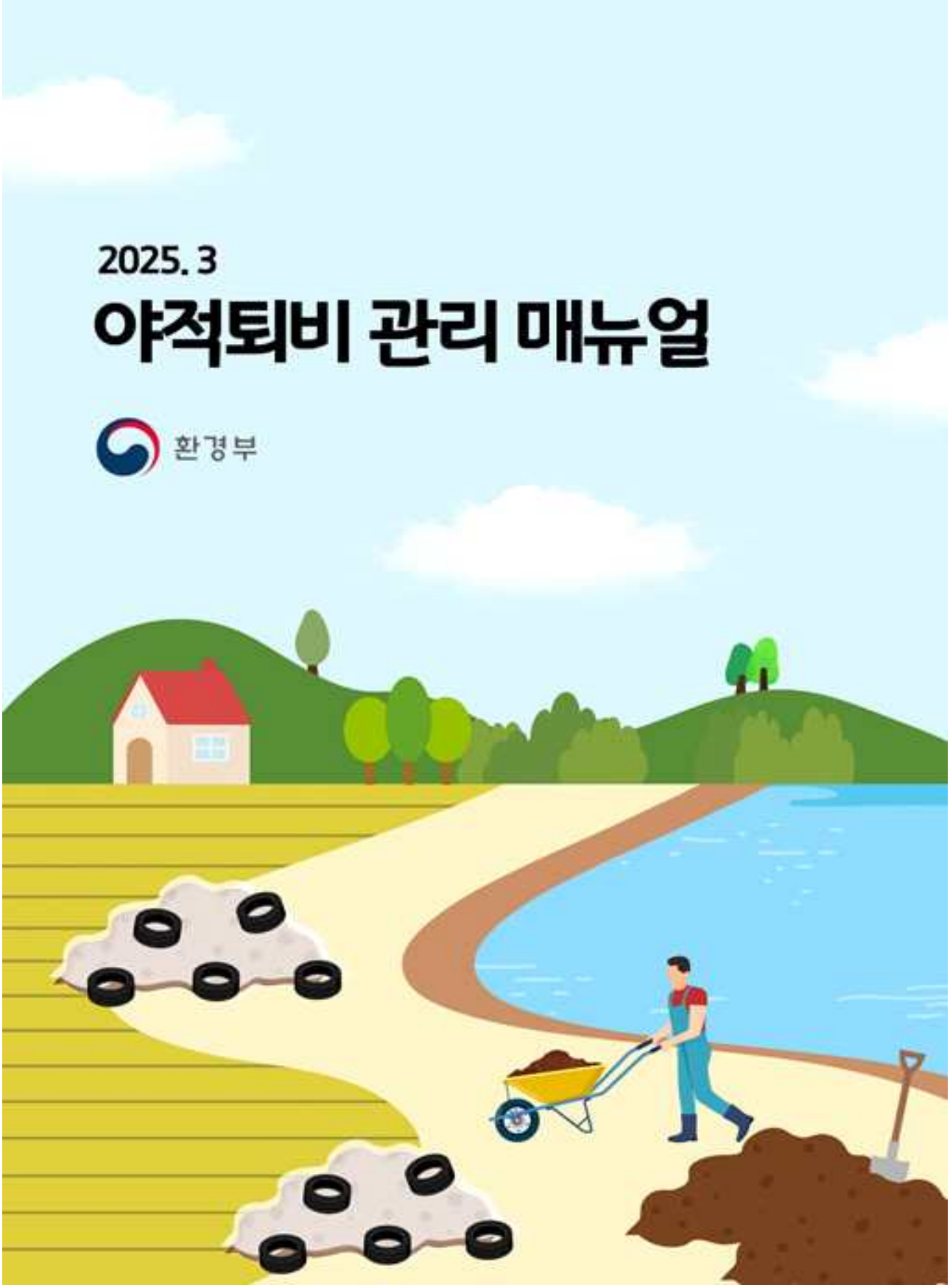

붙임 2 야적퇴비 관리 안내서 요약

□ 배경 및 목적

○ 매년 녹조중점관리방안의 일환으로 **야적퇴비 관리 등**을 추진했으나 **극한 폭염**(30일) 등 기후변화로 **'24년 최장 조류경보 발령**

○ 기후변화에 따른 녹조발생 심화에 대비하여 야적퇴비 **관리방안 강화 및 체계화 필요**

□ 야적퇴비 관리의 법적 근거

○ **가축분뇨법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축산업자의 책무), **제10조**(가축분뇨 및 퇴비·액비의 처리의무), **제21조**(퇴비·액비의 적정한 살포를 위한 행정지도 등), **물환경보전법 제15조**(배출 등의 금지) 등에 따라 관리

□ 기관별 역할 및 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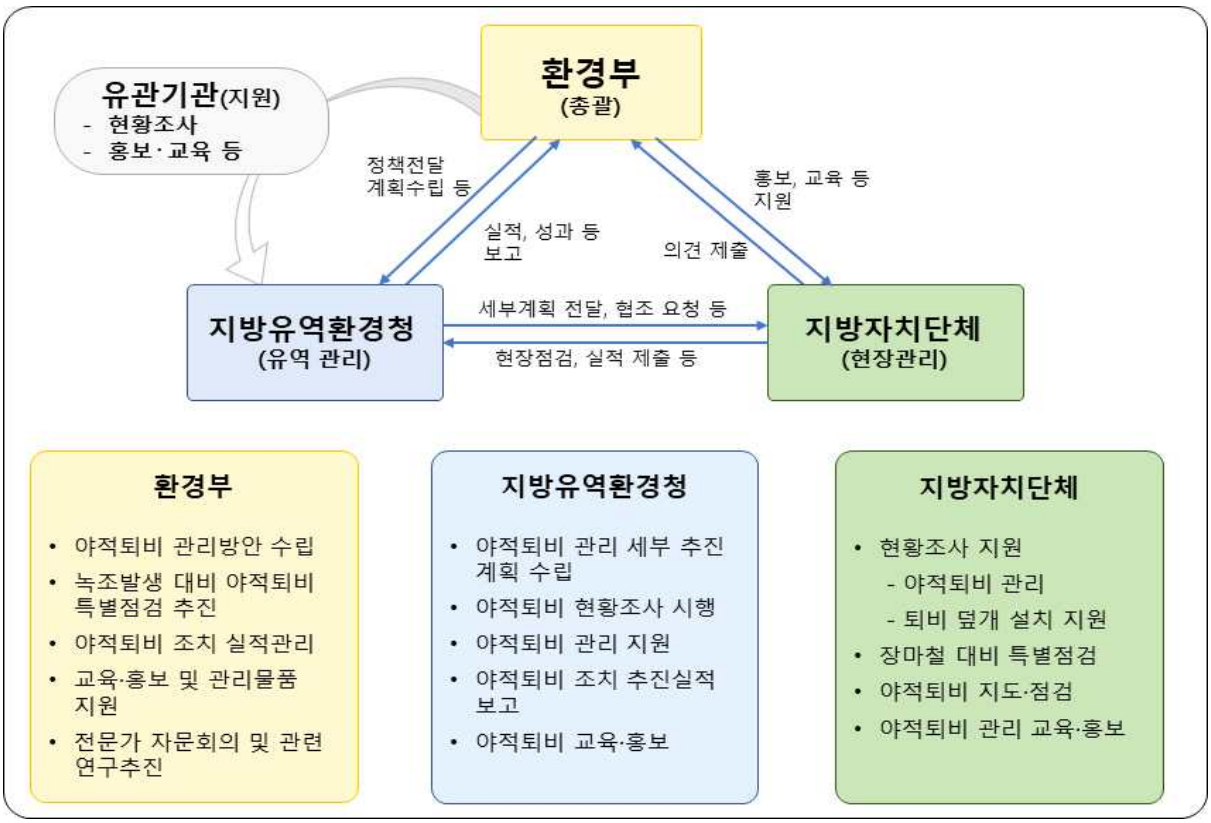

□ 야적퇴비 관리 주요활동

○ **(야적퇴비 현황조사) 봄철 농사 시작 시기부터** 장마철 이전까지 집중 조사하며, 과거 야적퇴비 적치 위치와 위성사진 등을 활용

- 퇴비의 위치로 **공·사유지 여부 파악, 퇴비의 소유자 등을 파악**하여 수거 등의 행정조치 및 덮개 설치 대상 등을 구분

○ **(부적정 야적퇴비 조치)** 공유지에 적치된 **야적퇴비는 관련 법에 근거, 수거하도록 행정조치** 하되, 소유자 확인 여부에 따라 **우선적으로 덮개를 설치**하여 오염원 관리, 사유지 퇴비도 덮도록 조치

○ **(야적퇴비 관리 교육·홍보) 농가의 인식개선**을 위해 **홍보물 게시, 관리 물품 지원**하되, 특히 **수계지역 중심**으로 매체를 통한 홍보 등도 추진

- 가축분뇨, **퇴비 적정관리 안내**서 및 **퇴비덮개** 등 배포, 퇴비 관리상태에 따라 **홍보물 제작**하여 지역별 배정

○ **(야적퇴비 데이터베이스 구축·관리)** 매년 조사된 **야적퇴비의 위치 정보, 조치 및 관리 실적** 등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가축분뇨관리 관련 계획 수립 및 차년도 야적퇴비 조사지역 선정 등 **정책에 활용**

붙임 3 야적퇴비 관리 법적 근거

가축분뇨법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축산업자의 책무)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의 가축분뇨 발생 현황을 파악하고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등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가축분뇨를 자원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가축분뇨법 제10조(가축분뇨 및 퇴비·액비의 처리의무) ①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배출·수집·운반·처리·살포하는 자는 이를 유출·방치하거나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액비의 살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고 살포함으로써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수역(이하 "공공수역"이라 한다)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유출·방치된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로 인하여 생활환경이나 공공수역이 오염되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배출·수집·운반·처리·살포하는 자, 그 밖에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의 소유자·관리자에게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의 보관방법 변경이나 수거 등 환경오염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가축분뇨법 제21조(퇴비·액비의 적정한 살포를 위한 행정지도 등) ① 배출시설설치자, 처리시설설치자 또는 경작농가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작목별 적정시비량 및 살포방법 등에 대한 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도기관을 통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의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촉진하고 그 이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배출시설설치자, 처리시설설치자 또는 경작농가에 대하여 작목별 적정시비량·살포방법 및 살포시기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물환경보전법 제15조(배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공공수역에 분뇨, 가축분뇨, 동물의 사체, 폐기물(「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또는 오니(汚泥)를 버리는 행위

② 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행위로 인하여 공공수역이 오염되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 행위자가 소속된 법인 및 그 행위자의 사업주(이하 "행위자등"이라 한다)는 해당 물질을 제거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을 방지·제거하기 위한 조치(이하 "방제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